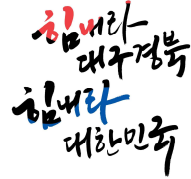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4. 29.(수) 총 4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당 자	·과장 문석준, 사무관 홍일산, 주무관 손완호 ·☎ (044) 201-4253, 4308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30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·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

-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·운영
- 아프리카·중동·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
- UTM 구축·운영 근거 마련...드론택배·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

-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「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드론법”)이 5월 1일 시행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, ▲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, ▲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, ▲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, ▲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우선,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*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‘드론 특별자유화구역’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
 - * (항공안전법) 특별감항증명, 비행허가, 시험비행허가, 안전성인증, 비행승인, 특별비행승인, (전파법) 적합성평가
- 이를 통해 물류배송, 치안·환경 관리,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,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‘드론 특화도시’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.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·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·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,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·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.
 - 이와 함께,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·중동·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, 연구개발·제조·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·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‘드론교통관리시스템(UTM)*’의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·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.
 - * (UTM: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):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포함)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,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, 안전조치 계획,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.
-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“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,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홍일산 사무관(☎ 044-201-42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

참고 1

「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주요내용

□ 드론의 정의 신설

- 기존의 '무인비행장치' 및 '무인항공기'는 물론,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체도 드론으로 정의하여 드론택시까지 지원

□ 드론정책 추진체계 정비

-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(5년 주기), 드론산업 실태조사(매년) 및 드론산업협의체*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

*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,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 공무원,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, 드론 관련 중요정책 심의

□ 드론평가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·운영

- (특별자유화구역) 드론활용 서비스의 실용화·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관련 규제*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제특구 지정·운영

* (항공안전법) 특별감항증명, 비행허가, 시험비행허가, 안전성인증, 비행승인, 특별비행승인, (전파법) 적합성평가

- (시범사업구역) 新개발 기체 및 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원활할 테스트를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□ 우수기술·사업자 지원

- 新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기술 지정,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자 지정, 창업 활성화, 지식재산권 보호·육성 등 규정

□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
- 드론택배·택시 시대에 대비하여 드론의 효율적·안정적 항행을 위한 드론 자동관제 시스템의 개발·운영 근거 마련

□ 해외진출·국제협력

- 드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기술·인력 국제 교류, 국제전시회 참가, 국제표준화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

참고 2

「드론특별자유화구역」 지정 공모 참고사항

□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개요

- (법적근거) 드론법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
- (목적)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이 신속히 실용화·상용화될 수 있도록 '드론활용 서비스 모델 테스트베드' 제공
- (내용)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·사업화 등을 위해 드론비행 관련 사전규제*의 유예,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

* 특별감항증명, 비행허가, 안전성인증(항공안전법), 적합성평가(전파법) 등

□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절차

